#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법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8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 강선우 · 임오경 · 박해철

김성회 · 김윤덕 · 서미화

김교흥 · 정태호 · 추미애

임호선 • 전현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가족돌봄아동·청년(영케어러)은 고령·장애·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, 이에 따른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.

이러한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,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그러나 현재는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이 아직 빈약한 상태이며, 가족돌봄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과 취업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영케어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이에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·청년이 가족돌봄 과 학업·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개념으로서 "가족돌봄아동·청년", "돌 봄대상가족", "사례관리 지원" 등을 정의함(제2조).
  - 1) "가족돌봄아동·청년"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.
  - 2) "돌봄대상가족"이란 고령·장애·질병·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함.
  - 3) "사례관리 지원"이란 가족돌봄아동·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·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실태조사 실시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·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 이름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(안 제8조).

- 라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·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아동·청년 복지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(안 제9조).
- 마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의 장은 실태조사 또는 학교, 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지원필요아동·청년에 대해 직권으로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- 바. 지원필요아동·청년 또는 그 동거 친족은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,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- 사. 지원필요아동·청년이 사례관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 한 돌봄대상가족 요건 등 선정기준을 규정함(안 제14조).
- 아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의 장은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 향후 자립계획, 돌봄·간병·주거·건강·일자리 관련 공공·민간 서비스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지원계획 종결 시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(안 제15조).
- 자.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, 건강관리 서비스, 학업·취업 지원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보증금 지원, 자기돌봄비 및 그 밖에 특별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).

차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활용, 학교생활기록 및 주민등록자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·활용, 가족돌봄아동·청년 정책센터 등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).

## 가족돌봄아동 · 청년 지원법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·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·사회생활을 병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족돌봄아동·청년"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·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돌봄대상가족"이란 가족(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) 중 고령·장 애·질병·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.
- 3. "사례관리 지원"이란 가족돌봄아동·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해 개인별 또는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지원을 말한다

- 4. "지원필요아동·청년"이란 가족돌봄아동·청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지원대상자"란 지원필요아동·청년 중 사례관리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- 6. "지원센터"란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- 제3조(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의 기본원칙) ① 가족돌봄아동·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은 인간다운 삶의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,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.
  - ② 가족돌봄아동·청년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아동 ·청년 본인과 돌봄대상가족의 이익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 봄아동·청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, 가족돌봄아동 ·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

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족돌봄아동·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

제2장 가족돌봄아동 ·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
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 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- 2.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
  - 3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및 제 도개선
  - 4.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
  - 5.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의 청년정책 기 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9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·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 돌봄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, 이를 제9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·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·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중에 지원필요아 동·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그 지원필요아동·청년의 이름, 연락처 (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)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

- 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결과 공표, 제2항에 따른 지원필요아동·청년의 개인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가족돌봄아동·청년정책위원회) ①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·청년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 - 1.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 - 2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· 평가에 관한 사항
  - 4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- 5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당연직 위원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- 2. 위촉직 위원: 아동·청년 복지 관련 단체의 장, 아동·청년 복지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가족돌봄아동·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 조까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(이하 이 조에서 "기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가족돌봄아동 · 청년 발굴 및 지원

제11조(지원필요아동·청년 발굴·상담 등) ①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발굴 아동·청년"이라 한 다)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관리 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발굴 아동·청년의 가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

- 여 직권으로 제13조에 따른 초기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.
- 1. 제8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지원필요아동·청년으로 발굴되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·진료·상담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원필요아동·청년으로 판단하여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지원을 요청한 사람
 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에 따른 교원
  - 나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
  -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
  - 라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 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
  - 마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
  - 바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
  - 사.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
  - 아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쉮터의 장
  - 자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
  - 차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필요아동ㆍ청년 발굴과 관련하

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필요아동·청년의 발굴·상담·신청·접수 등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전화, 온라인 등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사례관리 지원 신청) ① 지원필요아동·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(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초기상담)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한 지원필요아동·청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전화, 온라인 또는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초기상담 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1. 지원필요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,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
  - 2. 지원필요아동·청년 가구의 주요 소득원, 가계지출 및 사회보장 급여 수급 현황
  - 3. 지원필요아동ㆍ청년이 돌봄대상가족을 돌보는 데에 드는 시간
  - 4. 지원필요아동·청년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-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 실시 결과 지원필요아 동·청년 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(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그 지원필요아동·청년 가구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필요아동·청년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 실시 결과 지원필요아 동·청년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그 가족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의 절차·방법,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동의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지원대상자 선정기준) ① 지원필요아동·청년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 - 1.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

    가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
    나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

    수급자
    - 다. 희귀·난치성 질환, 중증질환 또는 그 밖에 심신쇠약 등으로

인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

- 2. 돌봄대상가족과 지원필요아동·청년 본인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을 것. 다만, 35세 이상 다른 장년 가구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필요아동·청년이 사실상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3. 돌봄대상가족과 지원필요아동·청년의 「주민등록법」 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. 다만,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지원필요아동·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4. 지원필요아동·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 이 제한될 것
-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사례관리 지원계획 수립 등)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종결할 때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제13조에 따른 초기상담 결과

- 2. 지원대상자의 향후 진로 및 자립계획
- 3. 주거·금융·법률·교육(공공·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)·건강· 일자리 분야 공공·민간서비스의 지원·연계 계획
- 4.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제공 계획
- 5.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, 간병 및 의료분야 공공·민간서비스 등 지원·연계 계획
- 6. 그 밖에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 계획
-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각종 공공·민간서비스(대출이나 그 밖에 비용이 부담되는 계약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수반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)를 지원대상자 및 그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, 제14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황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지원계획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계획의 종결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심리상담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 와 필요에 맞는 사례관리를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 다

- 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건강관리 서비스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, 건강검진,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.
- 제18조(학업지원 및 취업 연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습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·과 장학금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주거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,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관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종류, 지원대상·기준·방법·절차 등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자기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

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 및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돌봄대상가족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급여 우선 지원
- 2. 지원대상자 가족이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
- 3. 지원대상자 가족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 수급자 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
- ③ 제1항 따른 자기돌봄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의 선정기준과 지원 범위·방법·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가족돌봄아동 · 청년 지원 기반 조성

제21조(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돌봄아동·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를 설 치·유영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제11조에 따른 지원필요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상담 등
- 2. 제12조에 따른 사례관리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제13조에 따른 초 기상담
- 3. 가족돌봄아동 · 청년 사례관리 지원
- 4.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
- 5.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6.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- 7.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- 8. 가족돌봄아동 · 청년 지원 관련 홍보
- 9.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,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,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- 제22조(지원센터에의 연계) ①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(가목은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필요아동·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 또는 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족돌봄아동·청년의 발굴,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·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장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이하 "사회보장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가족돌봄아동·청년 공공데이터 제공·활용 등) 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원센터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가족돌봄아동·청년의 발굴,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"공공데이터"라 한다)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·관리· 보유할 수 있다.
  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

- 2. 「의료법」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이력
- 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
- 5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요청 범위, 요청 절차, 보유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가족돌봄아동·청년 정책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아동·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지원센터에 대한 체 계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가족돌봄아동·청년 정책센터(이하 "정책센 터"라 하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가족돌봄아동・청년 지원 관련 정책・제도의 연구・조사・기획
  - 2.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
  - 3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
  - 4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
  - 5. 가족돌봄아동·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·발 굴체계 구축

6.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 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#### 제5장 보칙

- 제26조(시범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·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 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, 실시지역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27조(비밀유지 의무) 이 법에 따라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 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

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- 제29조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 또는 정책센터 가 아니면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, 가족돌봄아동·청년 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30조(벌칙)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1조(과태료)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센터, 가족돌봄아동·청년 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